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에 국내로 귀환하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주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22.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51”을 “154”로 하고, 정무직 계 1 다음에 “청장(차관급) 1”을 신설하며, “청장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2”를 “105”로 하며,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영사직공무원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영사직공무원 “13”을 “12”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을 “7”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운전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을 “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1</u>	<u>154</u>	+3
정무직 계	1		
<u>청장(차관급)</u>	<u><신 설></u>	<u>1</u>	+1
<u>청장</u>	<u>1</u>	<u><삭 제></u>	-1
.	.	.	
.	.	.	
일반직 계	<u>102</u>	<u>105</u>	+3
.	.	.	
.	.	.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5 등급 · 6등급 외교통상직 · 영사직공무원	<u>4</u>	<u>5</u>	+1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 · 6등 급 외교통상직 · 영사직공 무원	<u>13</u>	<u>12</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5등급 · 6등급 영사 직 · 외교정보기술직공무 원	<u>6</u>	<u>7</u>	+1
<u>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운전주사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 직 · 외교정보기술직공무 원	<u>3</u>	<u>4</u>	+1
·	·	·	
·	·	·	